

圖書館法에서 무엇을 期待하는가?

—司書 및 司書教師 養成面에서 —

張 一 世

1. 머릿말

圖書館法 制定 目的을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國民의 教育과 文化的 早速한 發展을 圖謀하기 爲替」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圖書館法의 早速한 制定을 近10年동안 꾸준히 努力하였고 또 現在도 努力하고 있으나 아직껏 우리들의 目的을 達成치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國民들을 爲하여 不幸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미 여러해 동안, 數十次에 걸쳐서 圖書館法이 制定되어야 한다는 것을各界各層 人士들이 或은 新聞紙上을 通하여 또는 其他 言論機關을 通하여 널리 論議되었으므로 本人이 다시 이 말을 되풀이 하 고자 하지 않으나 圖書館法이 圖書館의 3要素中 가장 重要하고 核心的인 人的構成問題와 어떠한 關聯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制定되지 않으면 안될것인가를 研究해 보는 것도 매우 意義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순천히 專門職司書 및 司書補와 司書教師 問題에 局限하여서 考察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나라 is 참으로 畸形的인 圖書館 發展을 하고 있다. 文教部에서 法律로서 定한 것을 보면 圖書館의 3要素라고 불리우는 施設과 資料와 이를 움직여야 할 사람, 이 세 가지中 施設과 資料에 對하여

서는 所謂 大學設置基準令이니 또는 學校設置基準令이니 해서 어떤 基準을 만들어 놓았으나(勿論 이 基準令 自體가 많은 不備點과 矛盾點을 內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움직여야할 사람에 대한 基準은 數年이 지나도록 一言半句도 말이 없으니 이것이 畸形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한 施設과 資料만 있다면 저절로 움직인다는 말인가? 當局은 마치 대들보 없는 집을 짓는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圖書館의 機能・職務・專門職

圖書館을 움직이는 專門的인 사람이 왜 必要한가를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于先 圖書館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機能과 이機能을圓滿히 遂行하기 爲한 이의 職務가 어떤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本欄에서는 機能과 職務를 論하는 것이 直接的인 目的이 아니므로 一般사람들이 理解할 수 있는 程度로 簡略히 記述하는데 끝인다.

a. 機能

圖書館의 種類에 따라 이의 對象, 範圍 또는 方法이 다르므로 각각 그 機能에 差異가 생기는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어떤 種類의 圖書館을 莫論하고 基本的인 機能에는 變함이 있을 수 없다.

機能의 첫째는 씨-비스 機關이라는 것

이다.

近來에 와서 特히 이 問題는 더욱 強調되고 있다. 筆者는 이미 屢次 本報를 通하여 圖書館의 倫理에 對하여 論한 바 있지만, 거의 宗教的인 精神에 立脚한 셔-비스를 圖書館에서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셔-비스 精神이 要請되는 理由는 圖書館은 人種이나 信仰, 年齡, 職業, 貴賤의 差異없이 모든 社會人에게 平等하게 利用되어야 할 公共機關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願하는 모든 資料를 迅速히 그리고 正確히 提供하여야 하며, 利用者로 하여금 自由로히 選擇 할 수 있도록하고 또 그들의 利用을 拘束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그들의 目的을 達成 할 수 있도록可能한 協助를 하는 것이 圖書館 셔-비스의 本質인 것이다.

그리기 為하여는 圖書館의 特殊한 教育이 要請된다.

機能의 둘째는 情報센터一 라는 것이다.

圖書館은 모든 情報에 關한 中心部이어야 한다. 여러가지의 資料를 通하여 일교자하는 情報를 손쉽게入手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資料는 非但 圖書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視聽覺資料를 包含한 모든 資料이다.

그뿐만 아니라 情報를 生產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몇몇 圖書館에서도 實施하고 있는 바와 같이 必要한 索引를 만든다든지 目錄을 만든다든지 또는 크립핑等 그 圖書館의 對象에 따라 必要한 情報를迅速히 提供 할 수 있도록 하기 為한 情報를 만든다.

이러한 情報資料는 寫集하여서만은 그

구실을 碰撞할수 없음은勿論이다. 適切한 整理가 隨伴하여야 한다. 여기에 역시 專門的인 特殊教育을 받은 사람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機能의 셋째는 教育機關이라는 것이다.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모든 圖書館資料는 모두가 教育的인 資料이다. 따라서 그리한 資料의 利用을 通한 教育은勿論이리니와 公共機關利用을 通한 教育을 輕視할수는 없다.

우리들은 公共機關을 愛用할줄 모르고 자라왔다. 그로 因하여 우리들自身들이 얼마나 많은 害를 받고 있는가? 公共機關은 비단 圖書館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公共所有物을 말한다. 우리는 圖書館 利用을 通하여 公共物을 아껴 쓸 줄 아는 人間으로 教育되어야 한다.

機能의 넷째는 調査·研究機關이라는 것이다.

情報를 提供하거나 教育을 돋기 為한 資料들은 高度의 學問을 研究하거나 調査하는데 必要함은勿論이다.

날이 갈수록 社會는 複雜해지고 文化는 發展하고 있다. 눈부신 應用科學의 發展은 暫時도 研究를 멈출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時代의 圖書館의 役割은 말할수 없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와 調査를 充分히 할 수 있도록 하기 為하여는 亦是 그에 必要한 諸般 整備가 앞서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專門職의 必要性을 또 느끼게 된다.

機能의 다섯째는 文化機能이라는 것이다.

上記한 여러가지 外에 그 地方의 文化的인 中心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의 役割을

無視 할 수는 없다. 情報센터로서나 研究 調査에 必要한 資料뿐만 아니라 情緒를 걸터주고, 마음의 娛樂과 慰安을 얻을 수 있는 資料와 場所를 提供하여 주는 곳이 亦是 이곳이다.

우리들은 흔히 情緒의in 面이 缺乏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마도 살아 나가거나 벅찬 이 時代에 언제 情緒面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겠는가? 하고 反問할련지 모르나 情緒面이 있으므로해서 萬物의 靈長으로서의 人間의 價値가 있는것이 아닐까?

b. 職務

以上은 基本的인 圖書館 機能을 簡略하게 記述하여 본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機能를 充分히 發揮하기 為하여 圖書館에서 는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職務에 關하여서는 이미 先進各國에서 職務表等으로 仔細하게 說明된것이 있으나 여기서는 各部署別로 理解하기에 必要한것만 추려서 羅列하면 다음과 같다.

1. 管理部(館長·副館長 職務)

圖書館全般에 對한 監督·指導

圖書館委員會 關係一切

圖書館豫算 調整

職員의 職務分擔

藏書構成에 대한 傾向調查

會計事務一切에 대한 監督

2. 受入部

圖書館資料의 選擇

豫算의 調整

各種圖書目錄의 具備

資料注文事務

定期刊行物의 發注, 受入

圖書館資料 交換業務

圖書登錄에 關係된 業務

一般庶務

2. 分類·目錄部

分類作業

主題名標目錄 指定

編目作業

카드目錄의 排列과 整理

分類 및 카드目錄의 統計

3. 開覽·書庫部

圖書館資料의 保管 및 整理

圖書館資料의 點檢

圖書廢棄에 關한 事務

破損圖書의 修理 및 製本에 關한 業務

圖書館資料의 出納

出納統計

圖書延滯料의 徵收

4. 參考部

參考圖書의 管理 및 整備

諸般質疑事項에 對한 應答

書誌作成

讀書會, 研究會等의 指導

參考圖書 利用狀況調查

c. 專門職

以上 列舉한 職務를 分析해 보면 一般的인 大學課程을 修學한 사람이 到底히 할 수 없는 職務가 許多함을 發見한다.

分類라든가 編見이라든가 하는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部門으로부터 廣範圍하고 繼續的인 研修로서만 可能한 參考事務나 圖書館資料選擇等 專門的으로 이 方面의 學問敘이는 不可能하다. 따라서 効果의인 圖書館 活動을 期冀하면 專門的인 教育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本身에서 滿足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써비스機關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上記한 專門의인 經營과 業務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遂行하기爲하여는 專門的인特殊知識만 가지고도 안된다. 그 위에一般的의인敎養과宗教의인奉仕精神이透徹함으로써 비로서 하나의 圖書館専門職員으로서의資格이具備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現在의 圖書館職員은 거의資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를 끊어지면 앞으로의養成에는 이러한 점을充分히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3. 專門職의種類

職務欄에서列舉한것中特殊한専門教育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能히 할 수 있는事務, 例를 들면會計事務라든지一般庶務라든지, 또는 단순한 카드의複製라든지 하는 것은 이欄에서는論議의對象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한所謂一般事務職은一般的의in敎育을 받은 사람으로서充分하기 때문이다.

特殊한専門敎育을必要로 하는 사람을各國의慣例에 따라나누면司書, 司書補 및司書教師의3種으로大別된다.

勿論司書또는司書補라고이곳에서도大別하드라도圖書館의크기에따라各自의敎育程度, 經驗年數, 能力等에의하여館長, 副館長이니主任, 部長等으로呼稱되는것이나여기서는資格問題만이論議의對象이므로上記한3種에對하여서만言及한다.

a. 司書

司書는圖書館에있어서가장中樞의인存在이다. 모든専門의인知識이必要한業務를擔當할수있을뿐만 아니라德性이豐富하고奉仕精神에透徹한사람이어야한다.

모든일에親切하고快活할뿐만아니라恒常綿密한注意力과꾸준히職務를遂行할수있는熱意의所有者라야한다. 따라서司書는専門의인特殊敎育을履修한사람으로서德性을具備한사람이를되어야만한다.

b. 司書補

司書補는司書의業務를補助할수있는사람으로서어느程度의専門知識所有者이어야한다.

圓滿한性格의所有者로서館內의人和는勿論,協助의이고能動의이어서모든일에積極의이어야하므로特히健康한身體의所有者라야만한다.

c. 司書教師

學校圖書館의모든業務를擔當하는教師를司書教師라고부른다. 그러므로司書教師는一般的의in學事는말할것도없고그위에司書로서알아야할圖書館業務에關한全般的의것을習得하여야한다.

圖書館業務는圖書館의크기에따라달라지는것이아니다. 規模가적은圖書館일지라도똑같은方法에따라業務를遂行하여야한다. 단지그業務量이大圖書館에比해적을따름이다.

따라서司書教師의資格이야말로가장어렵다.

4. 專門職의養成

지금까지略述한圖書館의機能과이의職務로서볼때, 그러한専門의인業務를圓滑하게遂行할수있도록하기爲하여는専門의인特殊敎育이반드시배울어져야한다는것은누구나가쉽게首肯할수있다.

美國의著名한圖書館學者인엘리 듀이

氏는 이러한 사실을 일찍認識함으로써 70餘年前인 1887년에 이미 圖書館學校를創設하고 圖書館專門職養成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그 사람아이말로 先覺者라고 아니할 수 없다.

圖書館 本來의 諸般機能을 充分히發揮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圖書館法이 目的으로 하는 教育의目標를 早速한 時日內에 達成하기 為하여는 그곳에서 從事할 수 있는 專門職의 資格에 對하여 圖書館法에서 明白히 規定하여야 함은勿論이다.

다시 말하면 專門의 特殊教育을 받지 않은 사람은 圖書館專門職業務에 從事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專門의 education을 받은 사람만이 專門의業務를 擔當함으로써 効果의 圖書館機能을發揮토록 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处해 있는 現實을無視하자는 것은 아니다. 理想論으로만 흐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正規의 專門教育을 받는 사람以外의 圖書館員養成問題는 亦是 important課題의 하나이다.

다음에 專門職과 이에 準하는 圖書館員의養成問題를 個別의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a. 司書

위에서는 잡간 言及한바와 같이 圖書館에서 가장 核心의 位置에 있게 되는 것 이 司書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徹底한 專門教育을 必要로 하는것이 司書이다. 將次에는 司書가 그 圖書館 運營의 責任者가 되어야 하고 各部署의 責任者가 되어야하며 指導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司書는 最高學部인 大學教育을 履修하여야 함은 말할것도 없지만一般的의 大學教育이 아니라 專門의 大學教育을 받아야 한다.

勿論 母法인 圖書館法이 制定되고 開令으로서 細部의施行令이 마련됨으로써만 決定될 것이다. 外國의 例를 보거나, 우리나라에서의 지난 數年間의 經驗으로 보면 적어도 大學教育 4年 동안 最少限度로 圖書館에 關한 專門의 特殊教育(앞으로는 圖書館學이라고만稱呼)을 70學點以上 履修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學點은 한學期동안 每週 한時間의 課程을 滿함) 이러한 教育을 받아야만 비로서 指導者級의 司書로서充分한 資格을 갖출 것이다. 欲心으로 말하면 좀더 高度의 學問을 履修하는 것이 더욱 많은 効果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指導者級으로서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一般大學課程以上的教育, 即 大學院課程은 特殊分野의 研究課程에 屬하므로 여기서는 더論及하지 않겠다.

文敎部의 認可를 받아 現在 大學過程의 圖書館學 專攻學科가 設置된 곳은 延世大, 梨大를 為始해서 今年 새로 設置된 中央大를 合쳐 모두 3個校이고, 이미 前記 2個校에서는 100餘名의 卒業生을 輹出하고 있는 現狀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을 為하여 많은 中堅人物이 必要한 이때 참으로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00餘名 밖에 안되는 卒業生中相當한 數가 職場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現狀을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筆者가 보기에는 卒業生들이 가야할 곳에 適任者가 아닌 사람들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러한 圖書館運營이 말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圖書館學科 卒業生이 아닌 모든 사람이 不適格者라는 말은 아니다. 그 중에서 大學課程을 履修한 사람으로서 多年間 專門職 業務를 맡아온 사람들은 司書資格을 付與하여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專門教育을 받은 사람들이 充足되기 前까지는 大學課程 履修者로서 現職 圖書館에 奉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適當한 講習을 實施함으로써 不足되는 司書를 養成하여야 한다.

圖書館學을 專攻하는 學生들이 履修하여야 할 科目은 圖書館學概論, 圖書館管理法(兒童, 公共, 學校, 大學圖書館), 圖書館倫理, 目錄法, 分類法, 圖書選擇法, 圖書館史, 圖書以外의 資料, 圖書 및 印刷史, 書誌學(一般 및 專門書誌) 및 實習을 包含하여야 하며, 其他 必要에 따라範圍를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圖書館學 專攻學生 以外에게 司書資格을 付與하기 為하여 實施하여야 할 講習에서는 前記한 科目를 基準으로 하여 30 學點 程度를 基準으로 定하여야 한다. 이것을 時間數로 計算하면 約 500時間이 되며, 1週當 40時間으로 보면 約 13週의 修業이 必要하게 된다.

b. 司書補

司書의 職務를 補佐하여 實質的으로 圖書館 實務遂行의 中心이 되는 것이 司書補職이다. 따라서 司書補는 어느 程度의 專門教育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司書補는 獨自의 判斷과 責任下에 專門의 職務를 遂行하는 것이 아니므로 司書와 같은 程度의 教育程度를 바라는 것은 좀 無理라고 생각된다. 그러

나一般的인 敎養과 能動의 實務의 遂行을 為하여는 初級大學課程 程度의 敎育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最少限度로 18 學點 以上의 圖書館學을 履修한者라야만 上記한 職務를 困惑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8學點을 履修하기 為한 時間數는 大體로 300時間이 되므로 每週 40時間 程度로 計算하면 約 2個月間의 修學이 必要하다. 이期間동안 主로 實務의 科目에 置重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에 圖書館人으로서 學習하여야 할 基本의 科目을 受講하여야 한다.

따라서 受講科目으로는 大略 다음과 같은 比率의 時間數를 가져야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圖書館學概論	45時間
圖書館管理法	30 "
目錄 및 分類法(東洋書)	45 "
" (西洋書)	45 "
圖書選擇法	30 "
參考事務	45 "
實習, 見學, 特講	60 "
計	300時間

司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亦是 現職者들에 對한 司書補 講習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現職者中 司書補의 資格을 具備했다고 認定되는 者에게는 司書補의 資格을 授與하여야 할 것이다. 즉高等學校 卒業程度 以上으로서 專門職에 3年以上 勤務한 사람 가운데서 圖書館人으로서의 人格을 가진 사람 따위다.

c. 司書教師

前述한바와 같이 司書教師는 教師資格을 가진 사람으로서 圖書館 職務를 兼任할 수 있도록 專門의 特殊敎育을 履修

하여야만 비로서 司書教師로서의 資格을 具備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司書教師라는 職分은 一般 教師로서는到底히 代行 할 수 없는 特殊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圖書館法에는 마땅히 司書教師의 資格에 對하여 明確한 規定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當然 免許制로서 그 地位를 確保하는 길을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

司書教師資格을 獲得하기 為한 講習은 外國의 例를 볼 때 매우 區區한바 있으나 專門的인 職務를 圓滿히 遂行하기 為하여는 亦是 最少限度로 18學點 程度의 專門課目을 履修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圖書館法이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公의으로 司書教師라는 名稱이 使用될 수는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名稱이 當局에서나 또는 一般에서 公公然하게 불리우는 理由는 그려한 職責을 맡은 教師가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司書教師 講習을 當局에서 認定하고 있다는 事實은 더욱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講習時間數로 보면 司書補 講習과 같으나 履修科目은 自然히 差異가 생겨야 할 것이다. 必修의인 科目은 大略 다음과 같다.

圖書館學概論	45時間
學校圖書館運營法	45 "
圖書選擇法	30 "
圖書目錄 및 分類法	45 "
讀書指導	45 "
圖書館利用法	30 "
實習·見學·特講	60 "
計	300時間

이러한 司書教師 講習에 의한 資格授與

만으로 6,500餘校나 되는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의 司書教師를 養成하기에는 너무도 瞭遠한 일이고 또 恒久의in 方法도 되지 못한다. 이 方法에 併行하여 全國의 各教育大學 및 師範大學에 圖書館學 講座를 開設하여 그들로 하여금 究業과 同時에 司書教師職를 擔當할수 있도록 미리 教育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効果의in 教育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나라의 展望

一朝一夕에 모든 일을 成就 할 수는 없다. 그러나 適切한 法의 運營은 이 成就의 speed를 數十倍, 數百倍로 增加할 수 있다.

우리가 圖書館法에 期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點에 있다. 法의 制定으로 말미 암아 올바른 圖書館活動을 期待 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 암아 모든 國民이 크나큰 惠澤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職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安心하고 自己의 맡은바 職務를 遂行할 수 있게 된다면 그 法은 早速히 制定되어야 할 것이다.

上述한 것은 極히 常識의in 이야기로서 圖書館에는 專門의인 特殊教育을 받은 사람이 必要한가를 말했을 때이다. 一般 사람들이 痘을 고치기 위하여는 醫師를 찾아 가고, 法의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辯護士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圖書館利用에 관한 助言과 指導는 그 方面 專門家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极히 常識의in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위이 야기한 것은 圖書館 專門家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한 專門職의必要性을 認識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왜

냐하면 圖書館法의 制定이 한 몇몇 專門家에 의하여만 이루어질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教育界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理解하고, 國民들이 同調함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筆者는 月餘前 全南地方의 圖書館界를 볼수 있는 機會를 가졌다. 이곳을 다녀온 所感에 對하여는 다음 月報에 詳細히 記述할豫定으로 있으나 地方에 있는 여러 圖書館關係教育者들의 热意에 筆者は 매우 큰 感動을 받았다는것만 여기에 일러두고 싶다. 一線教育者들의 热意있는

活動은 우리나라의 앞길에 큰 光明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热意가 圖書館法制定에 큰 刺戟劑가 될것은 疑心치 않는다.

圖書館法이 制定되고, 이에 의한 施行細則이 公布되고, 關聯된 여러 法令, 例를 들면 教育公務員法이라든지 一般公務員法等이 改正되고, 國立中央圖書館法이 制定될때까지 우리들은 우리들이 맡은바 責務를 꾸준한 努力과 热意를 다하여 遂行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만이 圖書館法制定을 促求하는 唯一한 길이 될것이다.

(梨大·圖書館學科·助教授)

「學術雜誌索引 1960」

頒布 注文接受!

頒 價 950 원

會 員 800 원

外 國 1,560 (\$ 1200)

1,000 冊 限定版, 46 倍版, 420 面, 模造洋裝.

이 索引을 購入코자 하시는분은 本協會로 連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地方에 계시는 會員께서는 書面으로 注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